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18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 안태준 · 복기왕 · 임호선

김영환 · 이광희 · 채현일

윤호중 · 소병훈 · 박용갑

박해철 • 이병진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해 당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11조).

법률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린이"를 "어린이(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자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놀이기구"란 <u>어린이</u>	1 <u>어린</u>
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이(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	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
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	<u>다)</u>
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	
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	
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생 략)	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어린이가 접근, 이용, 이동하
	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
	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
	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계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u>설치</u>) (생 략)

<신 설>

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위한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u>설치</u> <u>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 치자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 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